

가재울역 트루엘 에코시티

[6·17 대책] 주요 해당 사항 안내

-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「주택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날(2020년. 07. 09)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,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합니다. 또한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합니다
- 본 아파트는 2020.06.19.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단지이며,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분양권 전매제한, 대출제한(LTV : 9억원이하 40%, 9억원초과 20%, 15억원초과 0%, DTI 40%) 등이 적용됩니다.
- 전매금지 및 재담첨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,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아파트는 2020.06.19.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단지로서,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화에 따라 계약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등 추가 제출 서류가 발생합니다.(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)
- 본 아파트는 2020.06.19.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단지이며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(예외 : 투기과열지구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, 무주택 자녀 분가, 부모 별거분양 등)됩니다.
-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,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(9억원 이하 주택)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, LTV(40%)규제 한도(개인대출여부 및 주택소유에 따라 계약자별 조건은 차등)로 적용됩니다.